

◎ 고 시

- 제2024-174호: 202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고시
- 제2024-175호: 망원동 464-1번지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 공 고

- 제2024-186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제2024-1880호: 망원동 인경서진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제2024-1883호: 마포구 구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 제2024-189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공람										

1.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마 포 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25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라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도시환경국”을 삭제하고,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라목 및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행정건설위원회 가. ~ 다. (생략) <u><신설></u> 라. ~ 아. (생략) 3. 복지도시위원회 가. (생략) 나. <삭제> <u><신설></u> <u>도시환경국</u> 소관에 속하는 사항 <u><신설></u> 다. · 라. (생략) ③ (생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교육체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u>마. ~ 자. (현행 라목부터 아목까지와 같음)</u> 3. ----- 가. (현행과 같음) 나. <u>환경녹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u>다.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u> <u>라. · 마.</u> (현행 다목 및 라목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
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2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제2항 중 “공무원의 신분증”을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연가계획 및 허가)”를 “(연가계획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허가”를 각각 “승인”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언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을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언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4시간이상”을 “4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를 “모성보호시간의 같은 날 사용을 승인”으로, “시간외 근

무”를 “시간외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11조(복장 및 제복) ① (생략) ② <u>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u> 제13조 (<u>연가계획 및 허가</u>) ① (생략)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u>허가</u>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u>허가</u>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 <u>이</u>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	제7조의2(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지급한다. 제11조(복장 및 제복) ① (현행과 같음) ② <u>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 포함)의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u> -----. 제13조 (<u>연가계획 및 승인</u>) ① (현행과 같음) ② ----- ----- <u>승인</u>----- ----- --. ③ ----- ----- ----- - <u>승인</u>-----. 제14조(특별휴가) ① ----- ----- -----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 3. (생 략)

③·④ (생 략)

⑤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직제·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되어 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

----- 사용할 -----

② -----

----- 36개월의 범위에서 -----

사용할 -----

1. ~ 3.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사용할 -----

⑥ -----

----- 승인 -----

로 정한다.

1. ~ 4. (생 략)

⑦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의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으로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의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

1. ~ 4. (현행과 같음)

⑦ -----

- 4시간 이상-----

-----.
----- 모성보호시간의 같은
날 사용을 승인-----

----- 시간외근무-----
-----.

⑧ -----

사용할 -----.

⑨ -----
----- 사용
할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4조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14조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2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2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의회에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

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
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3.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 등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등록신청서☐ 교섭단체명:☐ 대표의원 인영부

성명	직인	서명
한글		
한문		

※ 직인명 예시: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cm)

☐ 소속 의원 연서 명부

연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명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 보고☐ 변경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 “구분” 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대표의원 인영부

성 명		직 인	서 명
한 글			
한 문			

※ 직인명 예시: 00당대표의원의인(1변 길이 2.4cm)

☐ 소속 의원 연서 명부

연 번	소속 정당	의원 성명	서 명

※ 1개의 정당으로 구성된 교섭단체의 경우에는 “서명” 란은 불요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이동(정당변경)보고☐ 이동보고

대 상 의 원		이 동 사 항			비 고
소속 정당	성 명	일 자	내 용	사 유	

※ 이동사항 중 “내용” 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

☐ 정당변경 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대표의원 ○ ○ ○ (인)

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 당적 취득보고

의원성명	당적 취득사항		비 고
	취득한 정당명	취 득 일 자	

☐ 소속정당 변경보고

의원성명	정 당 변 경 사 항			비 고
	당초 정당명	변경 정당명	변 경 일 자	

년 월 일

의원 ○ ○ ○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 귀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2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연가계획 및 허가)”를 “(연가계획 및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허가”를 각각 “승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언을”을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을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12항 중 “언을”을 각각 “사용할”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허가”를 “승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본문 중 “4시간이상”을 “4시간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를 “모성보호시간의 같은 날 사용을 승인”으로, “시간외 근무”를 “시간외근무”로 하며, 같은 조 제15항 및 제16항 중 “받을”을 각각 “사용할”로 한다.

별표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시간 사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

24년 7월 2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육아시간을 사용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2024년 7월 2일을 기준으로 종전에 사용한 일수를 공제하고 적용한다.

제3조(경조사 휴가에 관한 적용례) 별표3의 개정 규정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의 휴가일수는 2024년 7월 2일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 비고 :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략)	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 승인-----
④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제24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④ -----
②·③ 삭제	----- 승인-----
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제24조(특별휴가) ① -----
1. ~ 3. (생략)	-----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 사용할 ----.
	④ -----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

	1. ~ 3. (현행과 같음)
	⑤ -----

를」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

⑥ ~ ⑩ 삭제

⑪ (생략)

⑫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8조에 근무상한연령이 정해져 있는 공무원이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와 직제·정원의 개편·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어면직되는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1년 전부터 6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⑬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1. ~ 4. (생략)

⑭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날의 최소근무시간은 4

-- 사용할 ----. -----
-----.

⑪ (현행과 같음)

⑫ -----

----- 사용할 -----.

⑬ -----

----- 승인 -----
-----.

1. ~ 4. (현행과 같음)

⑭ -----

시간이상(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는 3시간 이상으로 한다)이 되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육아시간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시간외 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⑮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⑯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 4시간 이상-----

----- . -----

----- 모성보호시간의 같은 날
사용을 승인-----

--시간외근무----- .

⑮ -----

----- 사용할

⑯ -----

----- 사용할 -----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
결 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입 양	본인	20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3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을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연구·정책개발·평생 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별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9. 평생교육에 관한 평생학습 축제 및 문화행사

제12조제1항 중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 명”을

“위해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소장과 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교육정책과장”을 “소관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를 “평생학습센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장 총 칙</u>	<u>제1장 총칙</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u>문자해득교육</u> ,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1. ----- ----- ----- <u>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u> ----- ----- -----.
2. “평생학습센터”란 평생교육에 대한 <u>연구·정책개발·평생교육종사자에 대한 연수</u>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 ----- <u>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u>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9조(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구민의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u>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u> 를 설치·운영한다. <u>다만, 근거리 학습</u>	제9조(설치) ① ----- ----- ----- ----- ----- -----.
	-----. <후단 삭제>

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 단위로 평생학습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10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

2. ~ 5. (생 략)

6. 평생교육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신 설>

<신 설>

<신 설>

7. (생 략)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구청장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근거리 학습권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별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
-----.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삭 제>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한 동별 평생학습센터 지정 및 운영

9. 평생교육에 관한 평생학습 축제 및 문화행사

10.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① -----

은 법 제5조 및 법 제16조에 따라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 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3조(운영요원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다만,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정책과장에게 소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수강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③ (생략)

----- 필요
한 경비-----.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운영요원 등) ① -----

-- 위해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
를 배치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
요한 소장과 직원----. -----
- 소관 업무 부서장-----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수강료 징수 등) ① -----
--- 평생학습센터 -----

-----.

②·③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3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2호 중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을 “**피해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를 제15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3호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략) 12. 「범죄피해자 보호법」 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u>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u>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 <u><신 설></u> <u><신 설></u> 13. (생략)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 ----- <u>피해발생일</u> <u>로부터 1년</u> ----- ----- ----- ----- ----- 13. <u>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u> <u>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u> <u>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u> 14. <u>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u> <u>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u> 15. (현행 제13호와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3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홀로 사는**”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으로,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
을 “**등으로 임종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1인 가구**”를 “**가구**”로
한다.

제4조 중 “**고립 가구**”를 “**고립가구**”로, “**관하여**”를 “**관하여 관계 법령 또
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고독사”란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1. ----- -----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 ----- 등으로 임종하는 것-----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 ----- ----- 가 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 ----- 고립가구 - ----- 관하여 관계 법령 또는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3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
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자동차 안전 점검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를 제외할 수 있다.

1. 영업용 차량
2. 1톤 이상 화물차량
3. 대여 및 리스차량
4. 사회복지시설 차량

제6조(협약체결)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환수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3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스토킹”을 “스토킹·교제폭력”으로 한다.

제2조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련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교제폭력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중 “스토킹”을 “스토킹·교제폭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스토킹**”을 각각 “**스토킹 · 교제폭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스토킹방지**”를 “**스토킹 · 교제폭력 방지**”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스토킹**”을 각각 “**스토킹 · 교제폭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스토킹**”을 “**스토킹 · 교제폭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스토킹방지**”를 “**스토킹 · 교제폭력 방지**”로 한다.

제7조 중 “**스토킹**”을 “**스토킹 · 교제폭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스토킹</u>을 예방 ·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 ·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에 따른다. <신 설> <신 설>	<u>서울특별시 마포구 스토킹 · 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 조례</u> 제1조(목적) ----- <u>스토킹 · 교제폭력</u>----- 제2조(정의) ----- -----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u>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u>」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교제폭력”이란 교제 중이거나 교제한 적이 있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등 형법 및 관

<신 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마포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
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
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
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
업)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
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

1.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 신고체계 및 예방을

런 특별법 수반행위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교제폭력
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 스토킹·교제폭력 -----

·.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
업) ① ----- 스토킹·교제폭력

② -----

1. 스토킹·교제폭력 -----

2. 스토킹·교제폭력 -----

위한 협력 체계 구축·운영

3. 스토킹에 대한 주민 인식개선,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생략)

5.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토킹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교

3. 스토킹·교제폭력

4. (현행과 같음)

5. -----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 스토킹·교제폭력 -----

② ----- 스토킹·교제폭력 -----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 스토킹·교제폭력 -----

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
에 따른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
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
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
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
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

제7조(비밀누설의 금지) -----

----- 스토킹·교제폭력 -----

-----.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국
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아래와 같
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35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제1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후단 중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를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를”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제7조(「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를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현행	부서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u>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문화재</u> 수리공사도 포함한다. 2. ~ 4. (생략)	제2조(정의) ----- -----. 1. ----- ----- ----- ----- <u>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국가유산</u> ----- -----. 2. ~ 4. (현행과 같음)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현행	부서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 및 「 <u>문화재보호법</u>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u>문화재</u> 를 말한다.	제3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 「 <u>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u> 」 제2조제1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현행	부서 개정안
제3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① (생략) 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 생할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2. (생략) 3.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u>문화재</u> 등 화 재, 붕괴 4. ~ 7. (생략) ③ (생략)	제31조(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u>국가유산</u> ----- ----- 4. ~ 7.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부서 개정안
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이 조례 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 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효에 관한 <u>문화재</u> 및 유물자 료의 수집·발굴·관리 사업 5. 6. (생략) ② (생략)	제4조(효행 사업 지원)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국가유산</u> ----- ----- 5.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부서 개정안
제10조(예산 지원 등) (생 략) 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마포구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u>문화재</u> ,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등) (현행과 같음) ② ----- ----- ----- <u>국가유산</u> ----- ----- -----.

6.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현 행	부서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급공사”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 라. (생 략) 마. 「 <u>문화재보호법</u> 」에 따른 <u>문화재 수리공사</u> 바. (생 략) 2. 3. (생 략)	제2조(정의) ----- -----. 1. ----- ----- ----- -----.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u>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국가유산 수리공사</u> 바.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7.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현 행	부서 개정안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제3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 국가유산으로 ----- 국가유산 보호구역 ----- ----- ----- -----.

8.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소 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부서 개정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 4. (생략)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표시 6. (생략)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국가유산 ----- 6.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36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촉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생략) <u><신설></u>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심의·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운영하며 위원회는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u>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생략) ③ <u>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u> 1. ~ 5. (생략) ④ <u>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 구의원 및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인 위원</u> 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생략) <u><신설></u>	제16조(위원회 구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심의·의결 후 자동으로 해촉된다.</u> 1. ~ 5. (현행과 같음) <u><삭제></u> ⑤ (현행과 같음) ⑥ <u>그 밖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u>

제17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삭 제>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4.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9조(위원회 운영) ① (생략)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④ (생략)

제2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과 구의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삭 제>

제19조(위원회 운영) ①(현행과 같음)

<삭 제>

③·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37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 종목별 지도자와 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3. “운영경비”란 경기부의 운영 및 경기인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 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에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여러 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경기부 설치 및 구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 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구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부를 둘 수 있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 각 1명과 종목별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업무 담당 국장, 부단장은 업무 담당 과장,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각각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업무 대행
 3. 간사: 선수단 운영의 제반 행정사항과 회계업무 수행
- ④ 제2항에 따른 경기부의 종목별 선수단의 정원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경기인과 계약체결 및 해지) ① 구청장은 경기인을 채용시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경기인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선발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마포구 체육회 등 체육 관련 기관·단체 또는 종목별 감독으로부터 경기인 자격이 있는 자를 복수추천 받아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경기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따른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3. 선수는 각 경기단체에 등록된 자

④ 제1항에 따른 계약조건, 계약기간, 재계약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구청장은 경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경기 또는 훈련을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피하는 경우
3. 경기성적이 저조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병역법」에 따른 입영대상자로서 입영에 따른 통지서가 나온 경우
6. 경기부를 해체하거나 예산이 감소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⑥ 경기인은 단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5조(경기인 보수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인에게 연봉, 수당, 기타 보수 등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기타 보수 등의 지급액, 지급기준, 지급 방법, 수당 종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경기부 운영 및 경기인 채용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기부의 설치 및 해체

2. 경기부의 연간 계획
3. 경기부의 종목, 경기인 편성, 경기인 연봉·보상액 책정, 우수경기인 선발 등
4. 경기인의 징계의결 및 계약해지 등 경기인의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
5. 모범경기인 선발·표창
6. 그 밖에 경기부 및 경기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③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연직 위원: 경기부 단장 및 부단장
2.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경기부 운용 또는 체육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명, 지도자 및 선수대표 중 1명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위원회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다.

제13조(운영·관리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기부의 운영·관리를 체육 관련 법인이나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기부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사무에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관리규정 등) ① 구청장은 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복리후생, 회계, 물품관리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마련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부 소속의 선수 및 지도자 등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합숙소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부 소속 선수 및 지도자, 선수관리 담당자 등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경기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38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39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관리대장의 작성)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의 유지·
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9조의2(관리대장의 작성)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 수거함의 유지·관리 및 정비 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40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된 건물과 법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합

건물 중에서 감독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집회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
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3. 고소·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4.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실시) ① 구청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자료제출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 할 경우 그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감독사항에 관한 검토) ① 구청장은 사무 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를 통해 법 제26조의5에 따른 이행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의 중지 등) ①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8조(결과의 통보) 구청장은 감독의 결과를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관리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41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일반인의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1과 같이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월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개인택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을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로, “정기권요금”을 “정기권 요금”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200미터”를 “300미터”로, “300미터”를 “600미터”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제1항 관련)

(단위 : 원-1구획당)

구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1회주차 시 5분당	월 정기권	
		주간	야간		주간	야간
1급지	500	-	-	400	250,000	100,000
2급지	250	150,000	60,000	250	180,000	60,000
3급지	150	100,000	40,000	200	100,000	40,000
4급지	100	50,000	20,000	150	환승목적주차 시 40,000 기타 50,000	20,000
5급지	50	30,000	20,000	100	30,000	20,000

※ 5급지 주차장을 주야간 모두 이용 시 월 정기권 요금

-노상주차장: 월 4만원

-노외주차장: 월 5만원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적용한다.
2. 1구획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3.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1급지: 아래에서 규정한 지역의 주차장으로써 4급지 및 5급지를 제외한 주차장

- 1) 홍익대학교 · 서강대학교 주변 지역 : 신촌로 · 대흥로 · 강변북로
· 양화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 2) 용산 · 마포지역 : 강변북로 · 마포대로 · 충정로 · 통일로 · 한강대로를
연결한 내부지역과 그 경계도로에 직접 접하고 있는 대지

나. 2급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주차장(1급지 주차장을 제외한다) 중 상업·업무 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다. 3급지: 1·2·4·5급지를 제외한 지역의 주차장

라. 4급지: 지하철환승주차장(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자동차 이용자들의 지하철 환승편의를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을 말한다)중 상업·업무기능이 혼재된 지역에 위치하여 환승기능이 저하된 곳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마. 5급지

1) 4급지를 제외한 지하철 환승주차장

2) 주택가에 위치한 주차장으로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곳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장

3) 1·2·3·4급지 주차장 중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간의 급지에 불구하고 야간에 한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

바.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지를 조정할 수 있다.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5. 주간 및 야간의 시간구분·야간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노상주차장의 요금 징수시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구청장은 개인택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개정 2020.2.27.>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3호·제15호와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탑승하여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 <신설 2020.2.27.>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신설 2021.12.30.>

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사람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해 설치된 전용 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0. 2급지 및 3급지 지역의 주차장에서 지하철 환승목적의 주차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4급지의 환승목적 주차시의 월정기권 요금을 적용할 수 있다.
11. 2급지부터 5급지까지 지역의 공영노외주차장에서 지하철환승목적으로 주차시 목적지 전철역장의 이용확인을 받아 주차요금 납부시 제출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2.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1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 국세청장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교부일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한다.
14. <삭제, 2020. 7. 9.>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에 인접한 공영주차장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공영주차장은 시장상인 및 이용고객이 주차 당일의 영수증 또는 시장상인회가 주차 당일 발행한 주차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주차 당일에 한정하여 총 주차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 <개정 2018.12.27., 2023. 3. 9.>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개정 2023.7.13.>
- 17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신설 2021.12.30.>
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19. 2개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20.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이하 이 호에서 “공공시설”이라 한다)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단, 학교 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가. 공공시설 이용(강습)자의 차량: 수강 시마다 프로그램에 따라 최대 3시간 이내 면제 <개정 2022.12.29.>
- 나.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정기권 50% 할인(단, 중복할인 불가)

21. 공무수행차량, 공공행사 참석자가 이용한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행사 참석자의 차량은 행사 주관기관에서 서면으로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2. 삭제

2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24.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신설 2019.3.28.>

25. 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전부 또는 3시간 범위에서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4.24.>

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6조의2에 따른 자원봉사자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 등) ①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u>다만,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u>	제12조(노외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방법 등) ① ----- ----- ----- <u><단서 삭제></u>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영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의 이용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일반인의 주차장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1과 같이 월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월 정기권으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공영노외주차장의 사용의 중지 또는 폐지 등 해당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이미 징수한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공영노외주차장에서 <u>개인택</u>	③ ----- <u>개인택</u>

시·개별용달 또는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정기권
요금은 별표 1의 공영노외주차
장의 월 정기권란의 해당 급지
별 주간금액과 야간금액을 합한
금액에 사용월수를 곱한 금액으
로 하되 다만 5급지 주차장에서
주·야간을 모두 이용할 경우의
월 정기권요금은 3만원으로 한
다.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한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
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
의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300미터 이내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
1항관련)

(생략)

- 비 고 -

1.~5. (생략)

6. 구청장은 개인택시·개별용
달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

시, 마을버스, 용달화물, 개별화
물의 운송사업용 자동차-----

----- 정기권 요금-----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 300미터 -----

----- 600미터 -----.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
1항관련)

(현행과 같음)

비 고 -

1.~5. (현행과 같음)

6. ----- 개인택시, 마을버
스, 용달화물, 개별화물의 운

용자동차에 대하여 일반인
의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
는 범위 안에서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영노외주
차장의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7.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
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
의 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의 경우
에는 1회당 최초 3시간까지
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
후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개정 2020.2.27.>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
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

송사업용 자동차-----

-----2년

-----.

7. -----

나. -----

1항제4호·제6호·제12호
·제13호·제15호와 같
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
이자로서 같은 법 시행
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
유공자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
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

라.~바. (생략)

8.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
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
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
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

-----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보훈등록증-----

다. -----

국가보훈부 장관 -----

라.~바. (현행과 같음)

8. -----

제2조에 따른-----
-----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
화적-----

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에서 환승을 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9.~15. (생략)

16.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3개월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한다. 다만,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은 제외한다.

17. (생략)

1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

9.~15. (현행과 같음)

16.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

17. (현행과 같음)

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
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
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
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
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
과 시 및 월 정기권의 경우
는 50%를 경감한다.

-----.

19.~21. (생 략)

22.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한 승
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 받아 지정된
주차구획에 주차할 수 있으
며, 주차요금은 해당 주차
요금의 100분의 50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승용차공
동이용 자동차”란 「서울특
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6조제1항 관련 별
표 1의 비고 제10호에서 규
정한 자동차를 말한다.)

19.~21. (현행과 같음)

22. <삭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42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발생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의 잔액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4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가목(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변경 허가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출입로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을 각각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68조”를 “법 제68조”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단위	기간단위	
1. 영 별표 3 제 3 호 에서 정한 점용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변경 허가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 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가격에 0.01를 곱한 금액
3.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점용면적 1㎡	1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 제 2. ~ 4. (생 략) <u><신 설></u>	제2조(도로점용허가) ----- ----- ----- ----- -----. 2. ~ 4. (현행과 같음) 5.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로 인하여 도로점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출입로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에 대하여 영 제7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자를 붙여야 한	제5조(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①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 ----- -----. ② ----- ----- ----- -----

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분할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및 법 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 ----- 「지방세징수법」 제25조 -----

-----.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① -----

-----법 제68조

-----.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신 설)	(신 설)	(신설)	(신설)	(신 설)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토지 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신·재생에너지 설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토지 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별표1] 점용료 산정기준(제3조 관련)

점용물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단위 : 원)
		점용 단위	기간 단위	
1.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호가목(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에 따른 공사로 인하여 도로점용 허가(변경허가의 경우 늘어난 면적에 한정한다)가 필요한 차량 진입로·출입로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노점			토지 가격에 0.007을 곱한 금액
2. 영 별표 3 제7호에서 정한 점용물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서울특별시 마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을 위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중 차양시설, 비가리개시설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토지 가격에 0.0001을 곱한 금액
3. 영 별표 3 제11호에서 정한 점용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점용면적 1㎡	1년	토지 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1744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 제4조”를 “제4조”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1. 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2. 구 소재 학교(「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재학생

부 칙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협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u>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u>	제8조(협회의 기능) ----- -----. 1. ~ 5. (현행과 같음) 6. <u>제4조</u> ----- -----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u>구청장은 헌혈장려 를 위하여 구민이 마포구 관내 에서 헌혈을 한 경우 온누리상 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 다.</u> <u><신 설></u>	제10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u>구청장은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 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u> ② <u>구청장은 헌혈장려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에서 헌혈을 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1회당 1만원 이내의 온 누리상품권 또는 마포사랑상품 권을 지급할 수 있다.</u> 1. <u>구 주소지로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u> 2. <u>구 소재 학교(「초·중등교육 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말한다) 재학생</u>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
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을 아래와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2024년 12월 26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규칙 제88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거리가게 자립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